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복한 삶을 열어주는

2021 장수 특수교육 운영계획



전라북도장수교육지원청

【장수특수교육지원센터】

□ 목 차 □

I. 장수 특수교육 기본 방향	1
II. 장수 특수교육 현황	3
III. 2020 장수 특수교육 주요 성과	8
IV. 2021 장수 특수교육 추진 과제	11
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11
1-1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11
1-2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12
1-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지원	13
1-4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 지원	16
1-5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8
2. 통합교육 환경 조성	20
2-1 통학학급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0
2-2 순회교육 지원 강화	22
2-3 통합교육지원 버스 운영	25
2-4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26
2-5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강화	27
3.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28
4. 특수교육지원 지원체제 구축	29
4-1 범국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	29
4-2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 보호 강화	30
4-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체계 구축	32
4-4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38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강화	39
5-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39
5-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41
5-3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무교육 지원	43
5-4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 후 학교 지원	44
5-5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원	46
5-6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	48
V. 부록	50
[부록1] 진단평가 도구 현황	50
[부록2] 장수특수교육지원센터 2021년 업무 추진 계획	51

I 장수 특수교육 기본 방향

1 장수교육 기본 방향



비전

학생의 행복한 삶을 열어주는 장수 특수교육



추진 과제

- 특수교육과정운영 지원
- 통합교육 환경 조성
-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 지원체제 구축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제공 강화

II 장수 특수교육 현황

1 장애영역별 현황

장애영역	장애영역				계
	유	초	중	고	
발달지체	1	9			10
지적장애		15	6	5	26
자폐성장애				1	1
지체장애		1		1	2
의사소통장애		1	2	1	4
학습장애				1	1
청각장애		1			1
정서행동장애				1	1
건강장애			2		2
총계	1	27	10	10	48

2 학교별 현황

가. 학교별 학생 현황

(2021. 3. 기준)

학교명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한 사람	소계	계북초	번암초	산서초	수남초	장계초	장수초	천천초	소계	번암중	산서중	장수중	천천중	소계	산서고		전남고 전남고	장수고	
인원수	*1	1	2	3	4	7	*4	*5 (2)	*3 (2)	28 (2)	1 (1)	3 (1)	4 (2)	1 (1)	9 (5)	3	*5	2	11 (7)	48 (7)

※ () 는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 * 는 특수교육지도사 및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학교

나. 특수교사 현황

순	학교명	특수학급 수	특수교사 수
1	유치원	1	1
2	초등학교	8	8
3	중학교	2	2
4	고등학교	2	2
계		13	13

다. 유치원 특수학급 현황

순	급	유치원명	학급수	주소
1	유치원	장수한사랑유치원	1	전라북도 장수군 장천로 237

라. 초등학교 특수학급 현황

순	급	학교명	학급수	주소
1	초	계북초등학교	1	장수군 계북면 문성길 7
2	초	번암초등학교	1	장수군 번암면 동강길 21
3	초	산서초등학교	1	장수군 산서면 동백로 7
4	초	수남초등학교	2	장수군 장수읍 장수로 1898
5	초	장계초등학교	1	장수군 장계면 한들로 69
6	초	장수초등학교	1	장수군 장수읍 향교길 11-8
7	초	천천초등학교	1	장수군 천천면 송탄로 22

마. 중학교 특수학급 현황

순	급	학교명	학급수	주소
1	중	산서중학교	1	장수군 산서면 보산로 1852-6
2	중	장수중학교	1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68

바. 고등학교 특수학급 현황

순	급	학교명	학급수	주소
1	고	산서고등학교	1	장수군 산서면 보산로 1852-6
2	고	장수고등학교	1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54-16
3	고	전북유니텍고등학교	1	장수군 장계면 장계7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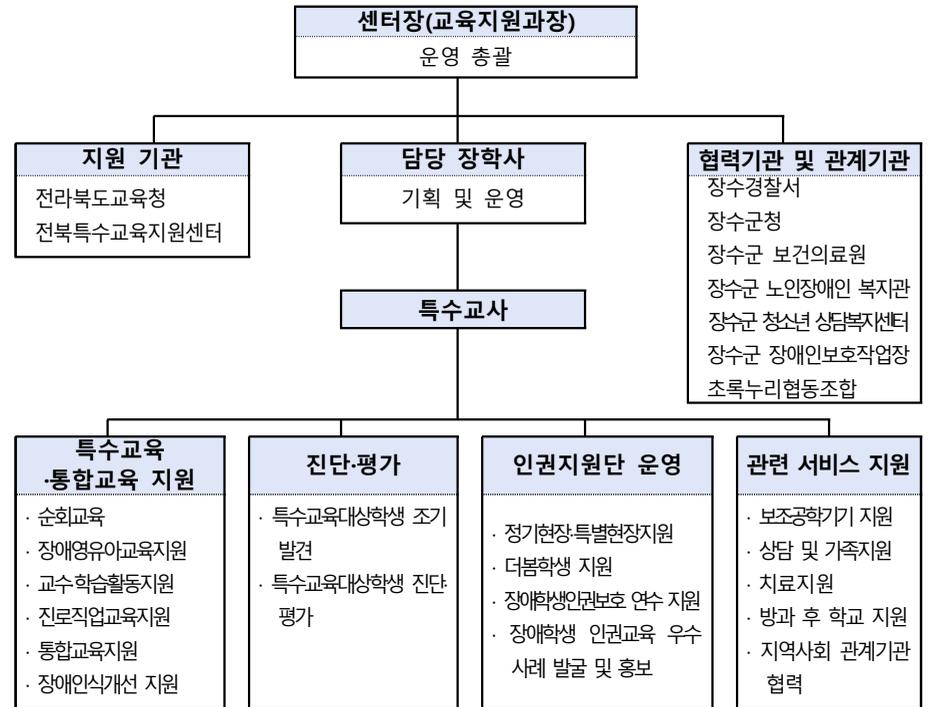
사. 통합학급 현황

순	급	학교명	학급수	주소
1	초	장수초등학교	2	장수군 장수읍 향교길 11-8
2	중	산서중학교	1	장수군 산서면 보산로 1852-6
3	중	번암중학교	1	장수군 번암면 지지로 28-12
4	중	장수중학교	2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68
5	중	천천중학교	1	장수군 천천면 춘송길 47

3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인력 현황						계
학년도	센터장	담당 장학사	유아특수교사	초등특수교사	중등특수교사	
2020	1	1	·	1	2	5
2021	1	1	1	1	2	6

학년도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시설			위치
	실명	수	면적(m ²)	
2020	사무실	1	45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50
	자료실	1	13.3	
2021	사무실	1	45	장수교육지원청
	자료실	1	13.3	



4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구분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주요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 주요업무 계획 수립.추진 - 특수교육 컨설팅 관련 업무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선정·배치) - 특수교육 실태조사, 연차보고서 등 각종 통계 - 계약제 교원 등 인력채용 관련 - 기타 특수교육 행정 지원 등 (재정교부, 인건비 등) - 관련서비스 행정 업무 (보조인력 관리 및 배치, 치료지원, 방과후, 통학비 지원 업무 등 행정적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 진단·평가 및 선별검사 지원 - 순회교육 운영 - 특수학급 교수·학습활동지원 - 통합학급 교사 연수 등 통합교육 지원 -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원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 운영 - 관련서비스 프로그램 지원(치료 프로그램,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족 지원 운영 등) - 기타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련 사항 등

■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체계 확립

▶ 특수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사회 변화에 따른 특수교육 지원의 확대 및 특수교육력 제고를 위해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역할 강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단·평가, 상담, 장애 영·유아교육, 교수·학습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직업교육지원 등 학교 현장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영역을 지원하여 특수교육지원의 전문성, 다양화를 도모하는 특수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특수교육지원센터 독립성 확보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별도 운영 조직
-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고(예: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진단·평가업무) 특수교육지원센터 고유의 업무 수행 강화

5 장수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분장

직위	사무 분장
장학사 350-5230	특수학급 컨설팅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지원단 총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관련 업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체험학습 대상자 선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력 채용 및 관리
	방과 후 학교 및 치료지원비, 통학비 지원 업무 및 전출금 교부
	특수교사 네트워크 운영, 특수교육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및 관리 업무
	장애인 편의시설
초등 특수교사 (운영팀장) 350-5287	일반학급 배치 유·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위한 진단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장애 영역별 진단평가
	특수교육 교원 연수 운영
	센터 예산 편성 및 관련 업무
	특수교사 협의회 운영
	통합교육지원 버스 운영
	특수교육 관련 업무 지원
	일반학급 배치 유·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유아 특수교사 350-5290	장애 영역별 진단평가
	영·유아교육 지원
	유·초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지원단 관련 업무 추진
	특수교육대상학생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하하호호 대운동회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
	일반학급 배치 중·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장애 영역별 진단평가
	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가족체험활동, 학부모 네트워크 운영 지원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중등 특수교사 350-5289	지역거점 프로그램 및 IT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 및 운영
	동부권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 연수 운영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일반학급 배치 중·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장애 영역별 진단평가
	중·고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운영
	건강장애 및 화상강의 관련 업무
중등 특수교사 350-5286	특수교육지원센터 물품 관리
	특수교육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통계조사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선별을 위한 홍보 및 홍보물 제작
	동부권 특수학교 설립 지역사회 위원

III 2020 장수 특수교육 주요 성과

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명	주요 성과
특수교육 담당교원 역량강화	-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17명 - 2020.12. -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대 및 자기개발을 위한 도서 제공
캘리그래피 (중·고)	-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9명 - 2020.10.8. ~ 10.22., 총 3회기 - 자신만의 시각과 아이디어를 담은 글씨 표현을 통한 창의성 함양 및 예술적 재능 향상
퍼포먼스 미술 (유·초)	- 유·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15명 - 2020.9.25. ~ 11.6., 총 5회기 - 미술 활동을 통해 전인적 성장 및 두뇌 발달 지원
조향체험 (중·고)	-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9명 - 2020.11.5. ~ 11.19., 총 3회기 - 자신만의 향수를 제조하는 과정을 통한 자신감 및 정서적 안정감 향상
특수체육	- 특수교육대상학생 20명 - 2020.6.8. ~ 7.16., 총 5회기 - 학생의 인지적, 사회적, 발달적 기능성 향상
재활승마 프로그램	- 특수교육대상학생 27명 - 2020.6.8. ~ 12.16. 총 15회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신체적 발달수준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승마 교육으로 참여 학생들의 문화향유 및 자신감 향상

사업명	주요 성과
특수교사 협의회 운영	-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20명 - 2020.6. ~ 12. -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학습 공동체 운영
순회교육	- 센터 초등 특수교사 및 중등 특수교사 - 2020.3. ~ 12. - ○○중학교 1학년 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통합교육지원버스 운영	- 14개교 통합학급 학생 및 교직원, 총 84회 - 2020.6. ~ 12.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통합학급학생의 현장체험학습 및 사회적 통합 지원
다양한 직업군의 이해	▶ 진로·직업 꾸러미 지원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47명 - 2020.6.5. ① 천연염색, 한방삼푸 만들기, 비즈 공예(공통) ② 천연비누 만들기(유·초) ③ 귀금속 공예(중·고) ▶ 진로·직업교육 - 장수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4명 - 2020.10.15. - 내용: 직업군인을 위한 준비 및 진로 교육
일상생활적응훈련	- 10개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총 32명 - 2020.10.13. ~ 11.26. - 찾아가는 요리교실 - 요리를 통하여 기본적인 가사 및 일상활동 체험
'꿈' 꾸러미 지원	- 유·초·중·고 16개교 특수학급 - 2020.4.22.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자료 및 개인 위생용품 꾸러미 지원
특수학급 교재·교구 지원	- 특수학급 9개 학급 - 2020.9. - 교재·교구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체험 기회 확대

사업명	주요 성과
장애인식개선	- 8개 학교 학생 및 교직원 총 1001명 - 2020.7.8. ~ 11.12.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 샌드아트, 휠체어 럭비 - 장애인식 개선 이론교육(교직원)
장애인식개선 홍보물품 전달	- 지역 유관기관 및 통합학급 - 2020.11.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직접 그린 삽화를 넣은 L자 파일 전달
인권지원단 정기 모니터링	- 매월 1개교 방문 현장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관련 학교 현장 지원 및 자문 제공 - 인권지원단 위원: 담당 장학사, 교감, 장수군청 사회보장팀장, 특수교사, 학부모, 학교폭력 상담사, 장수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
성교육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 2020.7.1. ~ 10.30. - 성교육 전문강사의 특수교육대상학생별 맞춤 성교육을 통한 성/인권교육
더봄학생 자기역량강화과정	- 더봄학생 선정: 3명 - 2020.7.7. ~ 10.16., 각 10회기 -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더봄학생으로 선정하여 자기 보호역량강화과정(집단미술치료) 실시 - 성 가치관 교육 및 감각재활치료, 심리상담
가족 지원 프로그램	-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가족 24명 - 2020.5.6. ~ 6.3.(총 5회기), 2020.8.4. ~ 8.13.(총 4회기) - 장수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긴뚝물 체험장 - 온 가족 그림책 읽기, 원예치료
순회 미술 치료 지원	- 신청학교 4개교, 7명 - 2020.3. ~ 9. - 특수교육지원센터 시간제 순회 미술 치료사

IV 2021 장수 특수교육 추진 과제

1 특수교육과정 운영 지원

1-1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강화

▶ 특수학급 교원의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확대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동법 시행령 제5조(교원의 자질향상)

○ 추진내용

구분	운영내용	시기
특수교사 전문성 함양 연수	- 특수교사의 장애유형별 교수 능력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 특수교육 관련 자격증(점역·교정사, 한국수어통역사 등) - 통합교육 관련 연수	7월, 11월
특수교사 네트워크 운영	- 월 1회 실시 - 교사 간 학급 운영 우수 사례 공유 및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협의 - 교실 수업 및 평가 방법 개선 연구	연중 (방학 제외)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 안내	- 국립특수교육원 '기본 교육과정 평가 역량 강화', '특수교사 온라인 수업 역량 강화' 온라인 연수 적극 참여 안내	연중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교사 연구회(동아리) 활성화 및 운영 지원

1-2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 특수교육 운영 내실화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으로 특수교육의 질 제고
- ※ 특수교육법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 추진내용

가. 특수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철저

- ▶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지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공포 '20.10.20., 시행 '21.4.21.)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원격수업 근거 마련
-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수·학습 자료 지원

나.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 특수학급(순회교육 포함)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일반 학교의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편성·운영

○ 협조 및 유의사항

- ▶ 신규-경력 특수학급 교사 간 특수교육 컨설팅 활성화 노력
 - 신규-경력 특수교사 간 멘토-멘티 운영
 - 특수교육지원단 적극 활용
- ▶ 특수교육 대상학생 입(진)학 설명회 개최
 - 시기: 2021. 6 ~ 10월 중
 - 대상: 관내 취(진)학 예정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 ※ 유·초·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하여 실행
 - ※ 차기년도 취학 진학을 위한 신규 선정·배치 시 특수교육관련서비스는 차기년도부터 지원함

1-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시의 내실화를 통한 특수교육 성과 제고
-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 추진내용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시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 참여(의무) 및 충분한 안내와 의견 수렴 절차 준수
 - 개별화교육지원 관련 부모교육 기회 제공
- ▶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 ※ **치료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시, 지원 사항을 개별화교육계획에 포함하여 작성**
- ▶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 ▶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전출학교는 전입학교로 14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 ▶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해당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 ▶ 학생의 장애 정도와 특성을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특수교육보조인력(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지요원 등) 활용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구체적인 실행 연계성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 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방안 모색

○ 협조 및 유의사항

-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통합학급 교사, 학부모 참여 등을 통한 의견수렴
-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운영 자료 지원
 - 자료 요청: 장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350-5286)
- ▶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시 통합학급 교사의 참여 및 역할 확대 방안 강구
- ▶ 특수교사 네트워크를 통한 학교급별 개별화교육 우수사례 공유
-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행동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행동지원 사항 포함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 계획 예시 자료 ■

개별화교육 계획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인적사항 및 개별화교육 시작 및 종결 시기

이름		개별화교육지원팀	1학기
생년월일	년 월 일생	팀장(관리자)	
학년반	학년 반	팀원(보호자)	
장애유형(등급)		팀원(진로담당)	
배치결과통지서 번호		팀원(일반교사)	
주소		팀원(특수업무)	
		팀원(관련서비스)	
배치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학급 배치 <input type="checkbox"/> 특수학급 배치		
1학기 개별화교육 시작 및 종결 시기	1학기	2021.3.1 ~ 2021.8.24.	

2.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1학기
치료 지원	
방과 후 활동 지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보조인력 지원	

3. 현재 학습 수행 수준

현재학습 수행수준	내 용

4.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영역	1학기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 추진목적 및 근거

- ▶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교육을 통해 2차 장애 예방 및 발달 촉진
- ▶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로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력 향상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동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동법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지원

- ▶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무교육 이행 철저
 -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유치원 입학 희망 시 법적인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우선 입학
 - ※ 2022년 유치원 입학 유아는 처음학교로 입학 시스템 실행 이전 선정·배치 완료
- ▶ 특수교육대상 장애 영아 교육 지원
 - 장애영아학급 운영: 전주유화학교 2학급
 - 장애영아의 조기발견과 교육 기회 확대 노력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장애영아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에 따른 양육수당 지급 가능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4383, 2020.8.24.)
- ▶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의 순회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 영아 선정 시 필요한 교육지원 및 관련 서비스 결정
-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월 361천원 한도 실비 지원)
- ▶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방치되지 않도록 취학 절차 등에 대해 적극 홍보
-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취학유예 및 면제 기준 강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예 및 면제는 반드시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필요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유예 및 면제는 법 제19조2항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만 인정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 ▶ 부모상담 및 정보 공유 초등학교 방문 체험 등 초등학교 입학 전 및 입학 초기 프로그램 운영
- ▶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전이 과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정보 공유 및 의견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 ※ 참고자료: 특수교육대상 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지원 가이드북 ('경기도교육청(www.goe.go.kr)-통합자료실-특수교육과-과자료실' 탑재)

○ 협조 및 유의사항

- ▶ 장애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의무교육 이행 안내
 - 관내 유관기관(유치원, 어린이집 등)과의 협력체제로 의무교육 이행 독려
 -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하여 장애 영아 무상교육 적극 홍보
 -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
- ▶ 선정 시 부모 상담을 통해 취학유예 및 면제 관련 정확한 안내
 - 취학유예 시 일반유아와 동일하게 관리되며,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무상교육비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지원 보류
- ▶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발달단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 ▶ 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 후 영·유아실을 활용한 영·유아 교육과정 계획

1-5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 장애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강화를 통해 장애학생의 소질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 실현
- ▶ 신축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다목적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체육진흥법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비장애학생과의 통합 참여 권장
- ▶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퍼포먼스 미술	유치원 초등학생	- 미술활동을 통한 전인적 성장 기회 제공 및 두뇌 발달 촉진 - 총 5회 실시 예정 - 장소: 신청 학교 특수학급	9 ~ 11월
난타 교실	중학생 고등학생	-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도모 - 총 5회 실시 예정 - 장소: 장수한누리전당 산디관	9 ~ 11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체육활동 지원 강화

- ▶ 장애 유형과 발달 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특수체육 프로그램	특수교육 대상학생	-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육 활동 - 총 10회기 예정 - 장소: 장수한누리전당 산디관	6 ~ 7월
하하호호 대운동회	특수교육 대상학생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준을 고려한 체육대회로 신체 활동 및 자신감 향상	5월

다. 문화예술 및 여가 활용 지원 강화

- ▶ 다양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여가 향유 능력 향상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특수교육대상학생 '같이 가자'	특수교육 대상학생	-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다양한 오감 학습 및 여가문화 향유 - 장소: 미정	10월

라. IT-페스티벌 대회 운영 활성화

- ▶ 특수학급 특성에 맞는 접근 가능한 종목 선정 운영
- ▶ 온라인 대회 등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

○ 협조 및 유의사항

- ▶ 장애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 진행
 - 지역의 특색 있는 장애학생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국립특수교육원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업하여 운영하는 통합체육 직무연수 과정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 ▶ 전북 IT-페스티벌 대회 적극 참여

2 통합교육 환경 조성

2-1 통합학급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체제 구축을 통한 통합교육 내실화
 -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 통합교육 실행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유아 통합교육 여건 개선
-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제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8조(교원의 자질 향상)

○ 추진내용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 일반학교 교장, 원장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매년 3시간 이수)
-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강화

나.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체제 구축

- ▶ 특수·통합학급 교사 협업을 통한 유치원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유아 정보공유, 협력 교수 등 협업 강화
- ※ '유치원 통합교육 가이드북(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2017)', '장애영아 교육 및 장애 유아 통합교육 우수사례집(교육부·전라북도교육청, 2017)', '통합 유치원 운영 모델(국립 특수교육원, 2018)' 적극 활용

다. 특수·통합학급 교사 협력 강화

- ▶ 특수·통합학급 교사 협업을 통한 통합교육 성과 제고
 - 특수·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네트워크 참여 활성화를 통해 협업 강화
 - 30시간 연수 과정 이수 권장
- ▶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제공 확대 및 학년 초 장애이해 관련 연수 실행
 - ※ 국립특수교육원의 통합교육 관련 원격 교육연수 과정에 교원이 참여 적극 권장

○ 협조 및 유의사항

-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순회교육 등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운영
- ▶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 ▶ 일반학교 교장, 원장 대상 연 3시간 이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안내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정도와 교육요구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평가 및 적합한 교육환경 배치로 개별학생의 학습권 보장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25조(순회교육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순회교육 지원 대상

-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로 선정되어 가정, 시설 등에 있는 영·유아

▶ 운영방법

-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특수교사가 실행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
-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은 이동거리,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장 또는 기관장의 판단으로 최대한 지원
- 1시간 기준 학생 수업시간은 유치원 30분, 초등학교 40분, 중학생 45분, 고등학교 50분으로 운영하되, 학생의 장애유형·정도·능력·기후·학습 내용에 따라 조정 운영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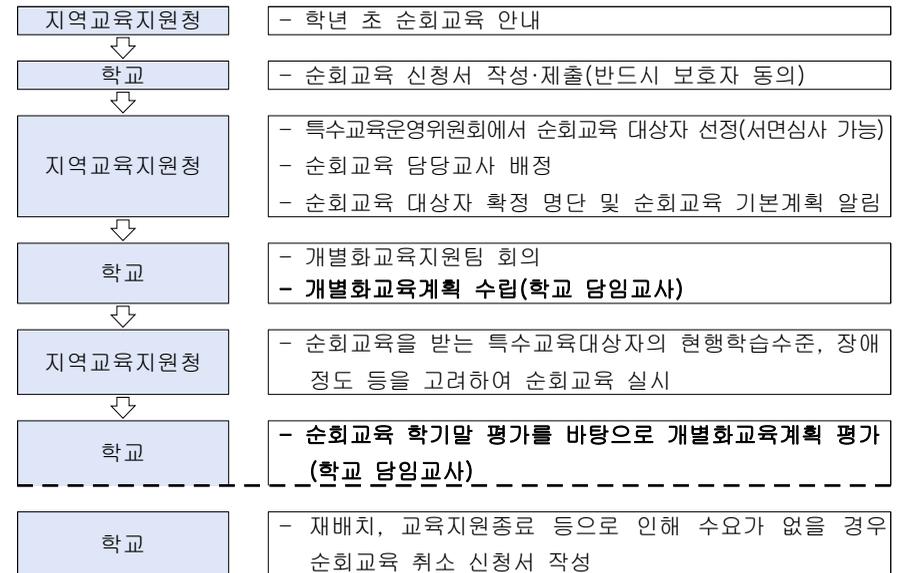
※ 반드시 순회교육이 가능한 장소가 확보되어 있는 학교만 신청 가능

나.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및 가족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연수 강화
- ▶ 순회교육대상학생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선정
- ▶ 순회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인권교육 실행
- ▶ 교재·교구 구입비 등 위한 운영비 지원 및 담임 역할 수행 지원

I 순회교육 지원 내실화

1. 순회교육 지원 절차



※ 1년 단위로 신청

2. 지원방법

- ▶ 학년도 단위로 운영하고 수업일수는 학생의 소속학교의 수업 연한 및 수업일수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 순회교육 일정은 매 학기 초 수립하여 공지하고 학생 개인 사유 또는 기관 사정으로 인해 수업이 진행되지 못한 경우 별도의 보강은 실시하지 않음
- ▶ 학생별 주 2회를 기준으로 운영, 방학 중 과제학습 및 유선 상담 등으로 연계 실시
- ▶ 순회교육 지원 내용은 통합교육지원, 특수교육지원, 진로·직업교육, 장애 인권교육 등을 포함할 수 있음
- ▶ 원격수업, 방문교육, 현장체험학습, 과제학습 등 다양한 방법과 협력학습, 교과별 학습제, 2인 담임제 등 운영될 수 있음

3. 순회교육 활동 계획

▶ 순회교육 기본 계획 구성 요소

- 연간 순회교육 일정
- 선정된 순회교육대상 학생 및 담당교사
- 수업 장소
- 교육과정 운영방법 및 출결

▶ 개별화교육계획

- 소속 학교 개별화 교육지원팀 구성 및 회의
- 소속 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작성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첨부
- 개별화교육계획은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 소속 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와 순회교사의 협의 하에 수시로 수정하여 순회교육에 반영
- 각급 학교 학기별 학사일정(학기초~학기말)에 따라 순회교육 계획 반영

▶ 순회교육 평가

- 순회교육 대상자의 성적처리 및 학교생활기록부, 개별화교육계획의 운영·관리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에 따라 학생의 소속학교에서 담당하여 처리
- 순회교사가 학기별로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의 소속 학교로 평가 결과를 보고함(연 2회)
- 학생의 소속 학교에서는 평가 결과를 개별화교육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함

4. 순회교육 중단

▶ 시기: 수시로 가능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와 담당교사 간의 사전 협의

▶ 대상

- 순회교육대상학생 중 수업일수 3분의 2이상 출석 수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취소 신청을 한 학생
- 순회교육대상학생의 질병 등의 이유로 장기간의 입원 등의 사유 발생
- 순회교육 중단 여건 발생시(교육환경 미제공, 폭력 등의 사건 발생)

2-3 통합교육지원 버스 운영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적 통합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버스 지원체제 구축

※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사회적 통합 활동 지원

-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통합학급의 사회적 활동 지원
 - 비장애 학생과 같은 학급에 수용하는 것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는 통합교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일상생활적응을 위한 활동 지원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장차 사회로 나아가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실생활과의 접근을 통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버스 지원

○ 협조 및 유의사항

- ▶ 통합교육지원버스 이용을 위한 신청서 작성 필수(3월)
- ▶ 원거리에 위치한 학급, 택시·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학급, 지난해 이용실적이 적은 학급의 경우 우선순위로 선정

2-4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5조(안전 및 편의시설·설비의 종류 및 기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 맞춤형 교수·학습용 보조공학기기 지원
 - 교육 현장의 수요조사 후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및 지원
- ▶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담당교사가 보조공학기기를 교수·학습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장애 유형별 거점센터에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운영: 각종 대여 장부 및 신청서 구비
 -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운영 매뉴얼(교육부·경상남도, 2017)’
- ▶ 원격교육 및 온라인 학습 보조공학기기 지원(웹캠, 디지털이저, 거치대, 헤드셋, 태블릿 PC)

○ 협조 및 유의사항

- ▶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수요를 파악하여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확충
- ▶ 보조공학기기 대여시 대여 신청서, 반납시 반납 확인서 작성
- ▶ 모든 보조공학기기는 매년 말(12.10.) 반납 완료

2-5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 **각급 학교의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이동권 보장 및 통합교육 기반 구축**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 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추진내용

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모니터링 실행

- ▶ 모든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및 예산 확보

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모니터링 실행

-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적정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 수립 및 설치 점검 강화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자료 참고
-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이행 지속적 모니터링 실행

○ 협조 및 유의사항

- ▶ **학교자체예산**으로 설치토록 한 의무시설(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소변기 핸드레일) 예산 확보

3 진로·직업교육 지원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 현장 중심 진로·직업 교육 강화로 특수교육대상학생 직무 역량 강화 및 진로의 다양화
- ▶ 특수교육센터 진로직업실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구성 운영

※ 특수교육법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및 특성화 확대

- ▶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사후관리 체계 구축

급	유·초등	중등	고등	
단계	계획 수립	직업인식	직업탐색	직업교육 직업평가
단계별 세부 내용	진로 체험 직업 교육	직업 적성 및 흥미 파악	진로상담 및 평가 현장직무직업체험 현장실습	

나.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요리, 쇼콜라티에	유치원 초등학생	- 총 10회 예정 - 장소: 장수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 진로직업실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계하여 운영	4 ~ 6월
바리스타	중학생 고등학생	- 총 10회 예정 - 장소: 전주 바리스타학원MBA - 바리스타실 사용과 연계한 제품 사용 및 관리 교육	4 ~ 6월

※ 학교 및 교육지원청 여건에 따라서 프로그램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4 특수교육지원 지원체제 구축

4-1 범국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

○ 추진목적 및 근거

- ▶ 교육행정기관과 일반학교의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장애인식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 분위기 확산

※ 초·중등교육법 제 59조(통합교육),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동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추진내용

가.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프로그램 운영

- ▶ 장애 체험 활동, 관련 행사 참여 등 체험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교육 신청학교 학생 및 교직원	- 보치아, 휠체어러키, 장애인식 개선 강연 등 - 통합학급 및 일반학급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지원	5 ~ 6월
장애인식 예술행사	관내 학생 및 주민	- 음악회 및 예술행사	9월

나. 장수교육지원청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2회(3.26., 4.19.) 예정

○ 협조 및 유의사항

- ▶ 학교별 소속 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구성 운영
 - ※ 장수교육지원청의 장애인식 개선 사업과 이중·중복 지원 지양
-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영역별 특성, 에티켓, 교우관계 형성, 인권교육 등을 포함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 **각급 학교 교직원 대상 연 1회 1시간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4-2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 보호 강화

○ 추진목적 및 근거

- ▶ 장애학생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원단 운영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자기보호 능력 신장을 위한 인권 및 성교육 내실화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제21조(통합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차별금지)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강화

-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교(성)폭력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인권지원단 설치·운영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3월 초(센터장, 담당 장학사,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학급 교장(감),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장애학생 보호자, 성교육 전문가, 상담 전문가) 전문가를 필수 인원으로 하여 8명 이상으로 구성
- 협의회 개최: 연 2회 이상 협의회 개최
- 현장지원: 매월 최소 1회 이상 일반학교 현장 직접 방문 점검
- 지원내용: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지원과 연수 다문화학생 선정지원, 우수사례 발굴과 홍보 등
- 결과보고: 현장지원 결과를 매월 30일까지 전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 제출

▶ 인권지원단 학교 정기현장지원 일정

- 매월 셋째주 수요일

일자	학교				합계
	유	초	중	고	
2021. 4.14.		번암초	번암중		2
2021. 5.12.		장계초		전북유니텍고	2
2021. 6. 6.				장수고	1
2021. 7.14.		수남초			1
2021. 8.18.	한사랑유치원				1
2021. 9.15.		산서초	산서중	산서고	3
2021.10.13.		천천초	천천중		2
2021.11.17.		장수초	장수중		2
2021.12.15.		계북초			1
계	1	7	4	3	15

나. 다문화학생 자기역량 강화 과정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조사 및 현황 파악
- 인권침해 경험이 있거나 인권침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다문화학생으로 선정
-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다. 장애학생 대상 인권·성교육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성교육 매 학기 1회 이상 실시

- 성폭력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자기 보호 역량 강화
- ※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장애학생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활용

▶ 특수교사의 성교육 및 장애 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행

▶ 방과 후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 담당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 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자료 활용

▶ 중·고등학생 대상 젠더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정체성 교육 병행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 지원 강화

▶ 통합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한 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 가족과 전문가 협력을 통한 부적절한 행동 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 협조 및 유의사항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인권지원단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침해, 학교폭력 및 성폭력 사안 파악 시 특별모니터링 실행 및 즉시 보고

- 매월 1교 이상 현장지원 실시(방학 중에도 반드시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실시 계획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성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성교육을 위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보건교사)의 협업 체계 구축

▶ 특수교육지원단 운영을 통한 문제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4-3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체계 구축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조기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 및 체계적 지원기반 마련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동법 시행령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 추진내용

가. 진단·평가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 일정

순	진단 평가 일정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일정	비고
1	2021.3.15.~4.13.	1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2021.4.20.(화) 14:30~	선정·배치, 재배치 등
2	2021.6.14.~7.13.	2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2021.7.20.(화) 14:30~	만9세 미만의 발달지체 선정학생 영역변경
3	2021.8.16.~9.17.	3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2021.9.28.(화) 14:30~	2021학년도 상급학교(초·중학교) 진학학생 선정배치
4	2021.10.25.~11.30.	4차 특수교육운영위원회 2021.12.7.(화) 14:30~	2021학년도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심사

※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진단평가 위원 대상 진단평가 도구 연수

▶ 진단평가 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진단평가 도구 연수 운영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장애 영·유아의 조기 발견 및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병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 점검, 영역에 맞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담당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로 함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수행,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진단·평가 및 심사 전문성 강화

- 추진계획에 따라 진단·평가위원 구성 및 위원 위촉
- 팀장은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로 함
- 팀원은 특수교사, 치료전문가 등 장애 영역별 진단·평가 전문가로 구성

마.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선정·배치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 의뢰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 특수교육운영위원회(또는 소위원회)에서 진단·평가 결과를 심사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법 제15조)
-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
- 교육지원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결과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결과 통지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시 유의사항

-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재배치(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 학습 부진 학생이 학습장애 아동으로 선정·배치되지 않도록 지침 준수
- ※ 기타 세부 사항은 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참고

바.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 취학의무 대상 특수교육대상아동에 대한 적령 취학 독려

- 의무교육 대상 중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입학 또는 재입학·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제2항에 의거 학년 결정

▶ 만 3~5세까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보육시설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의 교육요건을 갖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

▶ **과연령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지난 자나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여 학령기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될 기회가 제공되지 않은 과연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
※ 국가인권위원회 원고(2015. 8. 19.)
-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지 않고, 의무교육 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반드시 특수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 및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등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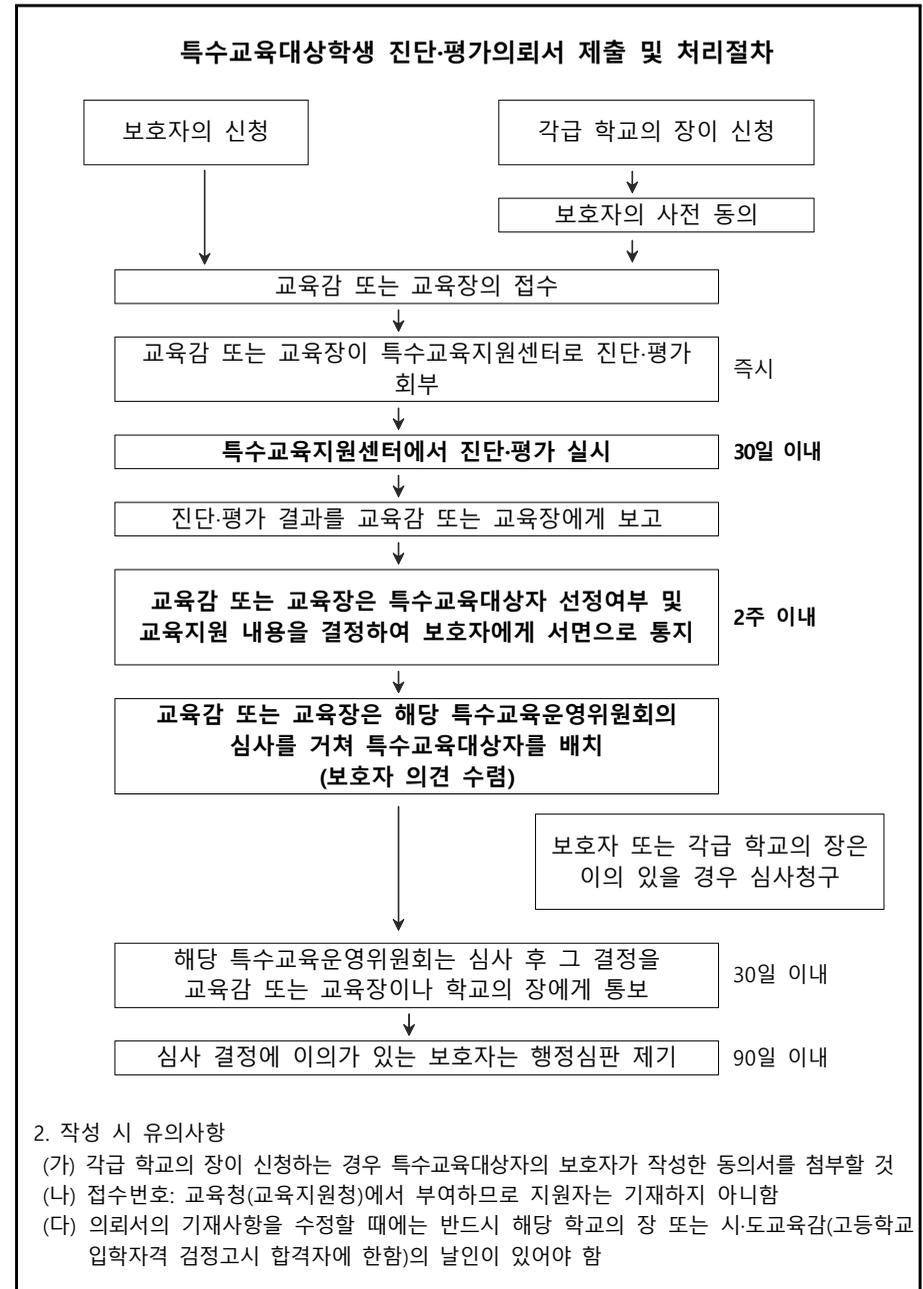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취소**

- 절차: 학부모 요구 →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결정 → 학부모에게 통보 → 배치 철회(일반학생으로 간주)
- 선정 취소가 결정되면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중단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각종 편의 제공 철회

○ **협조 및 유의사항**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절차 숙지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초등학교 취학 독려
- ▶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실행
- ▶ 지역 내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해 병·의원, 보건소, 영유아건강검진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4-4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 추진목적 및 근거

- ▶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 특수교육 기반 조성
- ▶ 신축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추진내용

가. 지역 중심의 특수교육 협력체제 구축

- ▶ 학부모 마을 교사 활성화(학부모 동아리 운영, 방과 후 마을 학교 등)
- ▶ 지역별 장애 인권 및 이해 교육 학부모 강사단 인력풀 지원
- ▶ 지역 유관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체제 구축
 - 지역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진로직업 직무실습 체험과 취업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지원 강화

- ▶ 학부모의 성장과 건강한 학교 참여를 통한 소통 지원
- ▶ 학부모의 주체적 학교 참여 보장
 -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의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기회 마련

구분	대상	운영내용	시기
학부모 네트워크 (동아리)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 특수교육 관련 부모교육 활동 정보 공유 - 지역과 연계 가능 또는 자격증반 운영	연중
가족지원 프로그램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특수교육대상 가족 공감·회복 프로그램	4 ~ 5월 8 ~ 9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보호자	-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화합·공감 체험 활동 프로그램	6월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강화

5-1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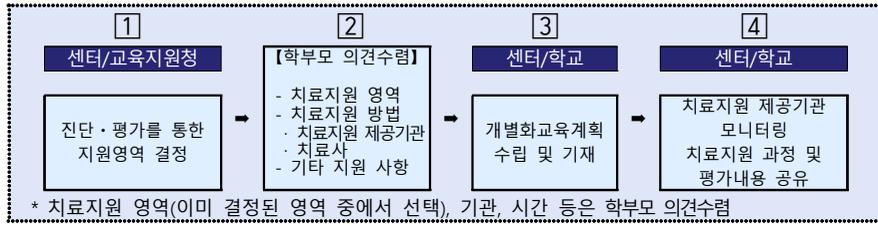
○ 추진목적 및 근거

-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지원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4조(치료지원), 동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동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 추진내용

-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필요 학생
 -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는 지원 불가
 -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원 불가
- ▶ 치료지원 영역 및 내용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 관련서비스(음악, 미술, 심리 운동, 감각통합)
 - 의사의 처방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물리·작업치료는 지원 불가
 -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와 동일 영역일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
- ▶ 지원 방법
 -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활용한 치료지원: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전자카드발급)
 - 운영시간은 방과 후 시간을 원칙으로 함
 - 방과 후 학교 치료지원 관련 프로그램 활용(비영리기관일 경우 가능함)
 - 치료지원 유관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 치료지원 제공 절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통해 교육지원 의견 제시(치료지원 포함)
 -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제시한 교육지원 내용을 토대로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치료지원의 내용과 방법 결정



▶ **치료지원 제공인력의 자격**

- 의요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소지자(물리치료, 작업치료)
- 국가자격 소지자(언어치료)
- 자격기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 소지자

▶ **치료지원 전자카드 「꿈 활짝 카드」 사용 안내**

- ① 카드 신청 및 발급(재발급 포함)
 - 특수교육지원센터
- ② 이용장소
 -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드림스 APP 또는 홈페이지에서 대상 가맹점 조회가능)
- ③ 이용방법
 - 매월 1일 지원액이 포인트로 생성
 - 매월 말일 월 잔여 포인트 자동 소멸

○ **협조 및 유의사항**

▶ **치료지원대상학생 지원 지침 숙지**

- 치료 중복 지원 및 과다 지원 방지 철저(보건복지부 '아이사랑' 카드)
- 치료지원 지침 숙지를 통한 민원 발생 억제 노력

▶ **치료지원 전자카드 사용 내용 정비(연 2회, 3월, 9월)**

▶ **미인증 사설 치료기관에 치료지원비 지출 발생 방지를 위한 서류 검토**

▶ **치료지원 제공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연 2회)**

5-2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지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통학버스를 유료로 이용하여 통학하는 학생
- 통학버스 노선 외의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
 - ① 통학버스 노선 외 지역이던 통학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읍·면 지역
 - ②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여 실제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
- 중증장애로 인해 통학버스 탑승이 불가능하여 통학버스 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학생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학생 스스로 통학할 수 없는 중증 장애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매일 동행하는 보호자

▶ **통학비 지급 기준**

지급기준		통학비 지급기준
거리 기준		- 버스 1구간 또는 1km이상
대중교통 등의 범위		- 차량(버스, 자가용, 택시, 관련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학원 또는 시설차량) ※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나 자전거 이용자는 제외
통학비 1일 지급횟수	학생	- 2회
	보호자	- 2회
통학비 1일 지급단가	학생	- 시내·외 버스비 기준 - 통학버스는 통학버스비로 계산
	보호자	- 시내·외 버스비 기준 - 자가용 이용 시 거리실비로 계산 (1km당 200원) ※ 자가용 이용 시 차량 기준 지급(학생 보호자 별도 지급 안됨)

지급기준	통학비 지급기준
통학비 지급 예산 범위	- 예산범위 내(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타 시·군으로 통학하는 경우	- 실제 버스 이용자는 시내·외 버스비 기준 - 통학버스는 통학버스비로 계산 - 자가용인 경우 거리실비로 계산 (1km당 200원) ※ 자가용 이용 시 차량 기준 지급(학생, 보호자 별도 지급 안됨)
시설에서 1대의 차량으로 여러 명의 학생을 통학시키는 경우	- 거리실비로 계산 (1km당 200원) ※ 차량 기준 지급 (학생별 지급 안됨)
통학비 제외 대상	- 도보 통학생, 기숙사생, 무료 통학버스 이용학생, 재택학습 학생 - 통학에 자비부담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자 - 무료 통학버스 이용이 가능하나 부모가 원해서 자가 통학하는 학생 - 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자 - 차량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일기 등을 이유로 특별한 경우만 이용한 학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통학비 관련 지원받는 자
통학비 지원시기	- 교육청: 상반기-연간 통학비(1회) 지원 하반기-전입자, 통학비 조정 등 과부족 정산 신청 - 학교: 매분기 지급이 원칙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할 수 있음
실제 거주지 여부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학생의 주민등록등본 열람 또는 주민등록등본은 제출받아 학교에 보관하되, 반드시 실제 거주지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것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신규 선정 배치될 경우	- 추가 신청 가능: 교육혁신과 담당자 협의 후
전입 학생의 경우	- 추가 신청 가능: 교육혁신과 담당자 협의 후
전출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경우	- 10만원 이상: 반납 - 10만원 미만: 반납 없이 타 용도로 사용 가능
통학비 신청이 누락된 경우	- 예산이 부족하거나 회계연도 마감 후 에는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당

5-3 특수교육대상학생 의무교육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공·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실현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 추진내용

▶ 지원 대상

-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 및 재원 중인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의한 장애로, 반드시 시·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유아

▶ 운영내용

- 사립: 1인 월 361천원 이내 실비 지원(누리과정 지원비를 포함한 교육활동 경비)
※ 공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유아학비로 지원함

○ 협조 및 유의사항

- ▶ 취학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므로, 초등학교 취학 유예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 ▶ 누리과정 지원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하여 신청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요망
- ▶ 무상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매월 교육과정 운영 일수의 15일 이상을 출석해야 함(15일 미만 출결 할 경우 날짜로 계산함)
- ▶ 유아 1인당 학비가 사립 월 36만1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추가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
- ▶ 공립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특수학급)과 공립유치원, 어린이집은 지원 제외

5-4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 후 학교 지원

○ 추진목적 및 근거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 및 부모의 사회활동 참여 도모

※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동법 제26조(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 추진내용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 후 학교 운영

▶ 방과 후 학교 운영 내용

- 학교별 방과 후 학교 운영협의회를 조직하여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
- 일반학교: 특수학급 방과 후 과정과 일반 방과 후 과정 중 선택하여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관인 등록된 비영리기관에서 수강할 수 있음
- 수요자 요구를 고려하여 치료지원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 확대 운영

▶ 지원기준

- 1개 프로그램 당(4명 이상 기준, 유치원은 3명 이상) 월 60만원 지원
 - ※ 단, 방과 후 과정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된 유치원은 지원 제외
- 참여 학생이 1~3명(유치원은 1~2명) 학교에서 프로그램 운영 시 1인당 10만원 지원

○ 협조 및 유의사항

- ▶ 취학유예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방과 후 학교 지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누리과정 방과 후 지원비와 중복 지원 불가
- ▶ 목적에 맞는 집행 및 복무관리 철저

-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서비스는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게만 지원되므로 선정·배치 상황을 정확히 확인 후 실행
 - 치료지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방과 후 학교

□ 집행잔액 반납 □

- 집행잔액 반납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모두 동일 ← 잔액 10만원 이상)
 - 반납 시기: 2022. 2월 중
 - 반납 절차
 - . 공립: 에듀파인 교육비 특별회계 징수→반납고지서 출력→납부(농협)
 - . 사립 고·특수학교: 해당 학교에서 본청 재무과에 납입 고지 요청 → 반납 고지서 수령 → 납부(농협)
 - ※ 원단위 반납금지(국고금 관리법 47조에 근거)
 - 에듀파인 시스템 반납 처리 절차
 - ① (학교회계) 2021년 회계연도 세입에서 과오납반환결의
 - ② (학교회계)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액 조정
 - ③ (교특회계) 수입관리-수입 현황-징수/반환현황-계획 작성-그 외 수입
 - ④ (교특회계) 2021년 교육비 특별회계 그 외 수입 징수결의(학교 대상 여부: 아니오)
 - ⑤ (교특회계) 반납고지서 출력 → 납부

○ 추진목적 및 근거

- ▶ 만성질환 치료로 인해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
- ▶ 개별화된 학습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학교생활 적응 도모
- ※ 특수교육법 제3조(의무교육 등),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특수교육법 제 25조(순회교육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 추진내용

가.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지원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

- ▶ 건강장애와 보호필요학생을 대상으로 병원학교 운영 및 지원
 - 운영기관: 전북대학교 어린이병원 한누리 병원학교(<http://www.jb-hospitalschool.kr>)
 - ※ 전국 병원학교 홈페이지: <http://hospital.s4u.kr>
 - 신청절차: 소속학교(초·중·고등학교)에서 병원학교로 직접 신청
 - 병원학교에서 입급 확인서를 소속학교로 통보
 - 개별화된 학습지원,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한 학교생활적응 도모
 - 병원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나. 원격수업 수강학생 지원

- ▶ 만성질환 등의 치료를 위해 연간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 및 이로 인한 유급 위기의 건강장애학생과 보호필요학생에게 원격수업 수강 지원
 - 운영기관: 한국교육개발원, 꿈 사랑 학교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소속교 담임, 특수교사, 원격교육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건강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
 - 원격수업 수강 관련 절차
 - ① 수강의뢰: 소속 학교장→ 도교육청→ 운영 기관
 - ② 원격수업 수강 명단 및 철회 명단 통보: 운영 기관→ 도교육청→ 소속학교
 - ③ 행정사항 통보: 운영 기관→ 도교육청→ 소속학교

다.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의 담임(담당)교사 교육 강화

-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 담임교사 및 업무담당자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
 -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이용 학생의 출결, 성적관리는 생활기록부 관리 지침 준수
- ▶ 건강장애학생 교과교육, 심리적응지도 등을 위한 연수 강화

라. 건강장애 선정 및 재선정

-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의료적·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상급학교 진학 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재선정
 - ※ 건강장애 선정은 병명에 따른 선정이 아니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개별학생의 의료적 진단 및 교육적 진단을 고려하여 선정
-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절차 진행 중에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허가한 경우에는 선(先)교육 지원 가능

마.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 ▶ 학교 또는 학생 대상별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통해 학교 적응력 신장 및 학업 격차 최소화 등 안정적 학생의 학교 복귀 지원
- ▶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할 때 소속 학교 교원, 교우들을 포함하여 운영 필요
 - 심리·상담 지원, 담임 또는 담당 교원 연수, 보호자 교육, 다양한 체험활동 등

○ 협조 및 유의사항

- ▶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활용을 통해 수업일수를 확보하고 유급을 방지
- ▶ 건강장애학생 소속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장애 이해 증진” 자체 연수 실시하도록 지원
- ▶ 정신질환학생은 건강장애 선정과 원격수업 수강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안내
- ▶ 학생이 치료 후 학교에 복귀하면 공문으로 반드시 원격수업 수강 해지 절차 안내(1/3 기준 유예기간 부여)

○ 추진목적 및 근거

-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신변처리, 등·하교 등의 교내외 활동을 지원하는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을 통해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참여 확대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동법 시행규칙 제5조(보조인력의 역할 및 자격),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 등)

○ 추진내용

가. 특수학급 특수교육 보조인력 관리

- ▶ 지원 대상
 -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중도·중복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기준으로 운영
- ▶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역할
 - 학교에 배치되는 보조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급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및 학교활동에 대하여 보조 담당
- ▶ 특수교육지도사 활용
 - 중증·중복장애학생 1~2명의 교육활동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학교 및 학급의 특수교육 관련 활동과 학생 지도에 대해 지원함

▶ 특수학급 설치학교: 특수교육지도사를 특수학급에 배치·활용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영

▶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특수교육지도사를 일반학급에 배치·활용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학급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

- ▶ 장애학생 지원 사회복무요원
 -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의 업무는 특수교육보조인력 역할에 따름

업무	분야	주임무	부수임무	형태
교육 문화	장애 학생 활동 지원	초·중·고 학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되어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활동, 승·하차 지도·취식 등 지원	기관운영과 관련된 지원 업무 ※ 부수 임무 수행 조건 공익목적 수행 범위,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 부수 임무 예시 청소, 제설작업, 행사지원 등 ※ 부수 임무 제한 혐오 및 사고위험 분야, 풍속사범 단속	주간

○ 협조 및 유의사항

- ▶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 특수교육지도사의 복무 관리 철저
 - 근무: 방학 중 비상시 근무 직종임
 - 근무일수: 기존 연봉체계의 일급단가 및 연봉기준일수(290일)는 폐지되고 월급 체제로 전환(2014.1.1.)됨
- ▶ 근로시간 준수 철저
 - 주 근로시간 40시간 준수,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가능
 - 1박 2일 이상 숙박형 체험학습에 특수교육지도사를 동반하는 경우 휴게시간에 학생지원 업무를 하지 않도록 주의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특수교육지도사의 방과 후 학교, 돌봄 지원이 고유 업무이므로 방학 중에 실시되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시 참여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지원 실시
- ▶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해 행·재정 업무 역할 부여 금지
- ▶ 특수교육 보조인력에 대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강화

구분	대상	운영내용	시기
특수교육 보조인력 연수	특수교육지도사 사회복무요원	- 무주·진안·장수 지역 연합 연수 - 3일차 연수로 진행	8월

- ▶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실사 준비 - 11월 예정(특수교육담당 장학사, 특수교사)

V 부록

■ [부록 1] 진단·평가 도구 현황

영역	검사도구 명	비고
지능검사	한국 웨슬러 아동지능검사 5판(K-WISC-V)	만6세~16세11개월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 4판(K-WPPSI-IV)	2세6개월~7세7개월
	카우프만 아동용 지능검사 2판(K-ABC-II)	만3세~18세
	종합인지기능 진단검사(CAS)	만5세~12세
	한국형 지능검사(KISE-KIT)	5~17세
적응행동 검사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LEITER-R)	만2세~7세
	국립특수교육원 적응행동검사(NISE-K·ABS)	만2세~18세
	사회성숙도 검사(SMS)	0~30세
정서행동	지역사회적응검사(CIS-A)	초등 정상발달장애인
	한국판 적응행동 검사(K-SIB-R)	~만17세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	6세~18세
	유아용 행동평가척도(K-CBCL 유아용)	18개월~5세
자폐성장애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 척도(YSR)	만11세~18세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척도(TRF) 교사용 보고용	
	한국판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검사(K-ADHD)	만3~23세
의사소통	아동기 자폐 평정 척도(CARS)	만3세이상 전 연령
	이화-자폐아동 행동발달 평가도구(E-CLAC)	만1세~7세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KOSECT)	만4세~9세
	우리말 조음·음운 평가(U-TAP)	2세~12세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4~35개월
학습장애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PRES)	2세~6세
	수용·표현어휘력검사(REVT)	만2세6개월~16세
	그림어휘력검사(PPVT)	2세~8세11개월
	언어 문제 해결력 검사(TOPS)	만5세~12세
	학습장애 선별검사(LDSS)	초1~6학년
발달지체	학습장애 선별검사(LDST)	초3 이상
	기초학력검사(KISE-BATT)	만5세~14세
	기초학습능력검사(NISE-B-ACT)	만5세~14세
	학습기술진단검사(LST)	초5~고
발달지체	영아선별 교육진단검사(DEP)	~36개월
	영·유아 행동 척도(PKBS-2)	3세~6세
	한국판유아발달선별검사(K-DIAL3)	8개월~36개월
	아동발달검사(K-CDI)	15개월~70개월
	발달지체 평정척도(DDCL)	4~9세

■ [부록 2] 장수특수교육지원센터 2021년 업무 추진 계획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선정 배치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4차 심사
	진단평가	1차			2차		3차			4차	
통합 교육 지원	순회교육	신청 기간	1학기 순회교육					2학기 순회교육			
	범국민 장애 공감 문화 조성	신청 기간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예술 행사				
	문화 조성	우리청	우리청								
특수 교육 지원	통합교육 지원버스	신청 기간	통합교육지원버스 운영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난타교실			
								퍼포먼스 미술			
					특수체육						
진로·직업	진로직업 교육	신청 기간	유·초·중·고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특수 교육 연수	특수교사 연수					연수				연수	
	특수교육 지도사							예정			
특수 교육 관련 서비스	가족지원	학부모 네트워크(연중)									
			상반기 프로그램	체험 활동			하반기 프로그램				
	특수교육 보조인력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신청·실사	
	보조공학 기기	연중 수시 지원									반납
장애 인권 지원	인권 지원단	1차 협의회				1차 평가회		2차 협의회			2차 평가회
		범암초 범암중 (4.14.)	장계초 전북 유·태고 (5.12.)	장수고 (6.6.)	수남초 (7.14.)	한서초 유치원 (8.18.)	산서초 산서중·고 (9.15.)	천천초 천천중 (10.13.)	장수초 장수중 (11.17.)	계북초 (12.15.)	
	성교육			신청 기간	성교육 프로그램						
상담 및 홍보		연중									

※ 상황 및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